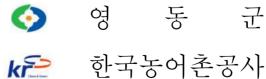
산익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)

2021. 01



	L
제1장 사업의 개요	1
1.1 사업의 배경 및 목적	1
1.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	1
1.3 추진경위 및 계획	1
1.4 사업의 내용	2
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	6
2.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	6
제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	8
3.1 평가항목의 설정	8
3.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	
제4장 대안의 설정	10
4.1 계획비교	10
4.2 입지 대안	11
4.3 수단·방법 대안	12
제5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	·개 근거 13
5.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근기	┤13

제1장 사업의 개요

1.1 사업의 배경 및 목적

- ㅇ 본 사업지구는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산익리 일원에 위치
- 산익리 일원의 과수원 및 경작지 등은 산익소하천의 취입보를 이용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가뭄시에는 하천에서 취수하는 취입용수 외에는 용수공급시설이 없어 영 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, 관정을 이용하여 일부 관개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나 가뭄시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.
- 따라서, 사업지구의 지역여건상 댐터는 수자원의 저류가 가능한 산익소하천 상류에 설치하여, 농경지에 용수공급을 원활히 함은 물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, 노동력 및 경제적 손실예방, 토지이용률 제고, 토지생산성 증대를 통한 소득증대와 필요시 생활(하천유지)용수를 공급함으로서 생활환경개선으로 지역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1.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- ㅇ 본 사업계획은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
- o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 2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)에 따른 "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"에 해당함.

<표 1.2-1>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

구 분	개발기본계획의 종류	협의요청시기
「환경영향평가법」	3) 「농어촌정비법」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	계획의 확정 전
파. 특정지역의 개발	정비사업 기본계획	

1.3 추진경위 및 계획

가. 추진경위

○ 2020. 01. : 산익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(예정지 조사)

ㅇ 2020. 05. 29 : 산익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

나. 추진계획

○ 2021. 02. : 산익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

(초안) 협의요청

ㅇ 2020. 02. : 산익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

(초안) 공람·공고 및 주민설명회

ㅇ 2020. 03. : 산익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

(본안) 협의요청(금강유역환경청)

1.4 사업의 내용

가. 사업명 : 산익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

나. 위 치 :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산익리 352번지 일원

다. 사업규모: 49,784m²

라. 사업기간 : 2020년 ~ 2023년

마. 사업시행자 : 영동군, (위탁시행 - 한국농어촌공사 옥천·영동지사)

바. 지정(승인)권자 : 영동군

사. 협의기관 : 금강유역환경청

아. 사업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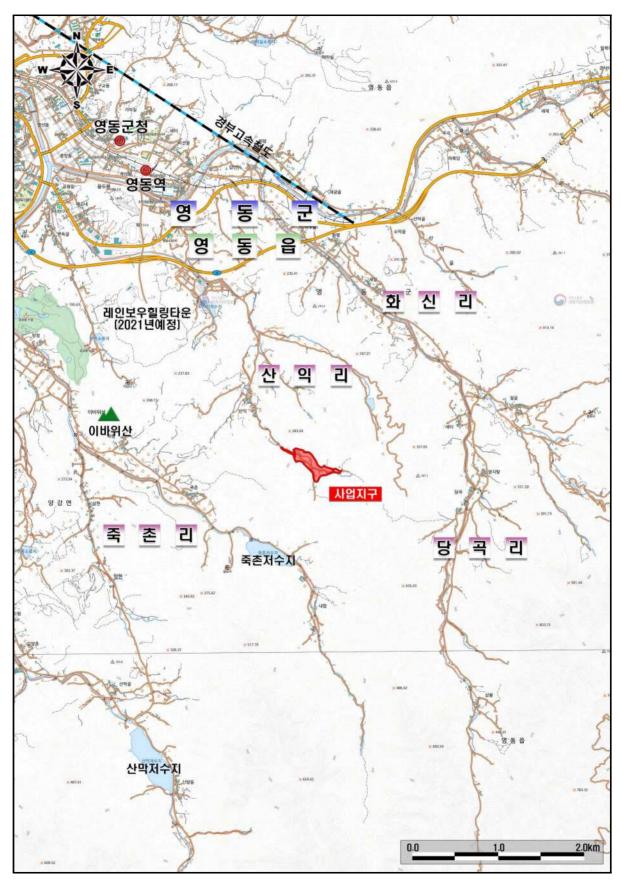
○ 저수지 1개소(유효저수량 : 150,040m²) 신설

구 분	사업면적 (m²)	유역면적 (ha)	수혜면적 (ha)	수몰면적 (ha)	유효저수량 (m²)
	49,784	118.0	20.0	41,009	150,040
산익지구	○ 주요시설 계획 - 제당 : B=5.0m, H=12.7m, L=93.0m - 여수토방수로 : B=4.0~5.0m, L=83.0m				

주) 사업면적은 이설도로 편입면적을 포함한 면적임

○ 이설도로 0.833k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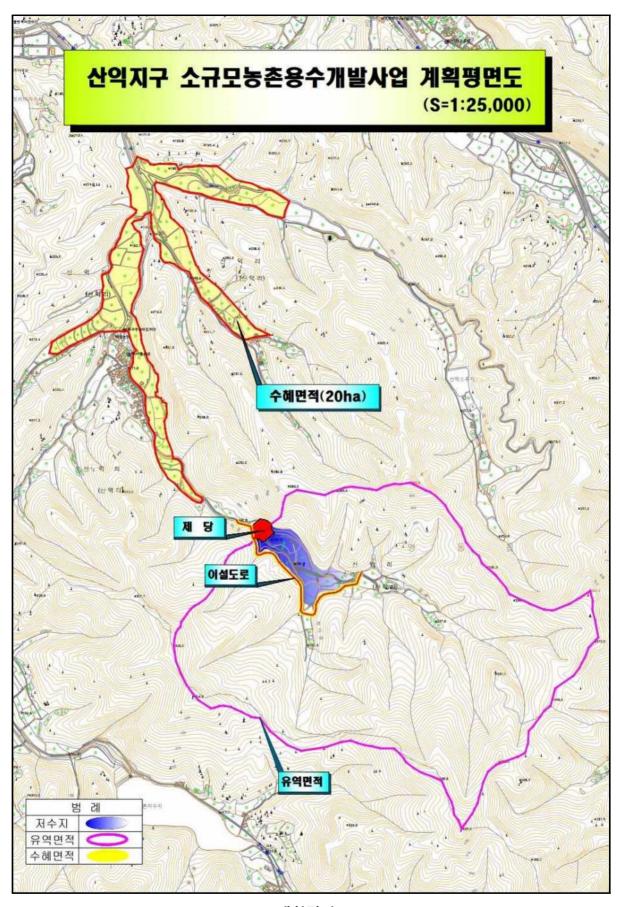
구 분	편입면적	연장	노폭	t (m)	포장	비고
	(m²)	(m)	총폭	포장폭	±ο	0177
산익지구	8,775	833	4.0	3.0	콘크리트	임도



(사업지구 위치도)



(사업지구 위성사진)



(계획평면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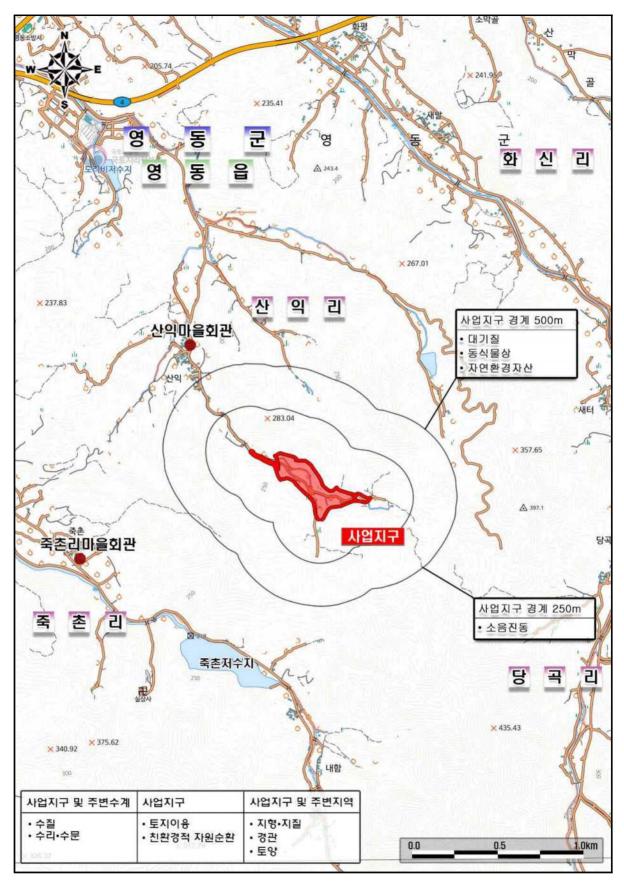
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2.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

o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(평가대상지역)을 평가항목별로 영향요인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함.

<표 2.1-1>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

구 분	세부항목		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	대상지역 범위
괴침이	상위계획		○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	사업지구
계획의	관련계획과의 연계성		연계성	
적정성 	대안 설정		○계획의 비교 및 입지 측면에서 대안 비교·검 	사업지구
	적정 <i>-</i>	성 	토	
	생물다양성·	서식지의	○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·식물상에 변화가 예상	사업지구
	보전	1	되는 지역	경계로부터
			○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 변화지역	0.5km이내
			○사업시행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 변화가	사업지구
 자연환경	지형 및 생태	축의 보전	예상되는 지역	및 주변지역
의			○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・지질 현황	X 1 L 1 1
 보전	주변 자연경곤	<u>!</u> 에 미치는	○생태적·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및 경	사업지구
	영형	;	관변화 등이 예상되는 지역	및 주변지역
		수질	○토공사로 인한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역	사업지구
	수환경의		○ 저수지 신설로 인한 수질변화	및 주변수계
	보전	수리·수문	○ 저수지 신설로 인한 수문환경변화	사업지구
			♥시구시 언글도 한번 구군된당한의 	및 주변수계
			○ 공사시 장비가동 및 토사이동에 따른 대기질 대기질 여참	사업지구
		대기질		경계로부터
			영향	0.5km이내
생활	환경기준		○ 공사시 장비가동 및 토사이동에 따른 소음	사업지구
	부합성	소음·진동		경계로부터
환경의 안정성			진동 영향	0.25km이내
100		= Ot	○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환경변화가 예상되는	사업지구
		토양	지역	및 주변지역
	자원·에너지순환의		○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에 의한	사업지구
	효율성		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사다시구
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	화경친화적		○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	사업지구



(평가대상 지역설정도)

제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

3.1 평가항목의 설정

o 평가항목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, 대안설정·분석의 적정성,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,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등 9개항목을 선정하였으며, 세부평가항복은 중점 검토항목 10개 항목, 일반검토항목 1개 항목으로 선정함.

<표 3.1-1> 평가항목 선정사유

	세부항목		선정사유
	계획의	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	○ 각종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
	적정성 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	○계획의 대안 비교·검토
		생물다양성·서식지의 보전	○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·식물상에 변화 ○ 자연환경자산의 변화지역
	자연환경 이	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○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 변화
입	의 보전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○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변화
지	_ _	소치거이 나눠	○ 토공사로 인한 토사유출 및 오수발생
의		수환경의 보전	○ 저수지 신설로 인한 수질, 수리·수문 변화
	생활	환경기준	○비상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
타		부합성	○공사시 투입장비로 인한 소음·진동 발생
당	환경의 안정성	THO	○ 공사시 토양환경 변화
성	100	자원·에너지순환의 효율성	○ 공사시 폐유, 생활폐기물 발생
	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	환경친화적 토지이용	○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

<표 3.1-2> 중점 및 일반검토항목의 선정

구분	검토대상항목
	○ 생물다양성·서식지의 보전(자연환경자산)
	○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
	○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
중점검토항목	○ 수환경의 보전(수질, 수리·수문)
	○ 환경기준 부합성(대기질, 소음·진동)
	○ 자원·에너지순환의 효율성
	○ 환경친화적 토지이용
일반검토항목	○ 환경기준 부합성(토양)

3.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

o 본 사업지구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사업특성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시 직·간접적으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대상지역을 평가범위로 설정함.

<표 3.2-1>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

	구 분		대상지역 범위	평가방법
계획의	상위계획 관련계획과의		사업지구	○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
적정성	적정성 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	사업지구	○계획의 비교 및 입지 측면에서 대안 비교검토
	생물다양성·서식지의 보전		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.5km이내	○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·식물상에 변화 -육상 및 육수 동·식물 분포현황 및 변화 예측 -종 분포, 식생, 식생보전등급 변화예측 ○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 변화지역
자연 환경의	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	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○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-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-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영향유무
보전	추변 자연경관에 미 영향		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○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의 변화 -사업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예측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
	수환경의 보전	수질	사업지구 및 주변수계	○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수환경 영향 -토사유출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
	T단O기 보다	수리·수 문	사업지구 및 주변수계	○수리·수문변화 및 영향 검토
	환경기준	대기질	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.5km이내	○ 공사시 투입장비 및 토사이동에 의한 비산먼지 등 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-공사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영향예측 및 저감방 안 수립
생활 환경의 안정성	부합성			○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·진동 발생 -공사시 건설소음·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
		토양	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○사업시행에 따른 토양환경 변화 예측
	자원·에너지순환의 효율성		사업지구	○ 공사시 건설폐기물, 폐유 및 생활폐기물·분뇨발생 -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산정 및 적정처리방안 수립
시화경제 환경과의 조화	▷ 환경진화적		사업지구	○사업시행 전·후 토지이용계획 및 변화 예측

제4장 대안의 설정

4.1 계획비교

o 행정계획 수립 및 행정계획 미수립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 분석을 실시함.

	FII	OL.	
	대	안	
구 분	대안1 :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(Action)	대안2 :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(No Action)	
토지이용	○저수지 개설 등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발생	○토지이용 변화 없음	
수자원 이용 측면	 저수지 개설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농산물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기여 수자원 확보로 갈수기 하류수계에 긍정적인영향이 예상됨 	○ 가뭄시 충분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움 ○ 농산물 생산성 저하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	
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	○주변 환경관련지구, 지역 및 보호지역 없음 -환경관련 영향권역내 상수원 보호구역, 야 생생물보호구역등 없음	○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없음	
생태계 훼손 가능성	○저수지 개설에 따라 일부 생태계 변화가 예 상됨	○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없음	
지형 훼손에 미치는 영향	○저수지 개설에 따른 지형변화가 예상됨	○지형 훼손이 미치는 영향 없음	
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	○ 농촌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에 따라 지역주민 의 생활환경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	○생활한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	
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○ 저수지 개설에 따른 경관변화가 예상됨	○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	
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	○공사시 장비투입 등에 따른 일시적인 대기 오염 물질 및 소음·진동 발생, 하류 수계 부 유물질 농도 증가 등이 예상되나 그 영향 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	○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 없음	
선정	©		
선정사유	○ 농촌용수개발에 따라 주변지역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나 저수지 개설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자연재해 예방, 농작물 지역의 산불발생시 빠른 대응을 통하여 주변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는 바, 계획을 시행(Action)하 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		

4.2 입지 대안

○ 저수지 계획을 수립하고자 대안별 입지 비교·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선정함.

_		.21	-21	
구	분 	1안	2안	
계획평	계획평면도 (제학명(1-80m. H-15m) (제학명(118ha) (제학명(118ha)		本部(1-110m, H-15m) (中部(103ha) (中部(103ha) 中部(103ha) 中部(1	
		- 산익리 42답 위치로 마을과의 거리는 645m로 수혜구역에 용수를 공급하는	◦ 저수지 신설 - 산익리 30-1답 위치로 마을과의 거리는 920m로 수혜구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계획	
저 (규		∘ 수몰면적(ha) : 4.98 ∘ 유역면적(ha) : 118 ∘ 저수량(만m') : 15	∘ 수몰면적(ha) : 3.41 ∘ 유역면적(ha) : 103 ∘ 저수량(만m') : 11	
지형 지질적		∘ 우안, 좌안 깊음	∘ 우안은 깊고 좌안은 얕음	
여수로	르위치	∘ 우안에 위치 선정 ∘ 지질·지형적여건 : 양호	∘ 우안에 위치선정 ∘ 지질·지형적여건 : 양호	
취수시	설위치	∘ 우안 : 사통	∘ 우안 : 사통	
기술적	장점	∘ 유역면적의 증가로 저수량 확보용이 ∘ 댐높이가 낮아짐(H=12.7m)	∘ 수몰면적 감소 ∘ 이설도로 연장 감소(-)80.0m	
여건	단점	∘ 수몰면적 다소 증가 ∘ 이설도로 연장 증가(+)80m	∘ 유역면적 감소로 인해 저수량 확보 미흡 ∘ 댐높이가 높아짐(H=15.0m이상)	
채	채택 ◎			
● 댐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결과, 저수역 조건은 물론 지형, 지질조건이 선정사유 제당 및 제반 부대시설물(물넘이 및 취수시설 등) 설치가 용이하며 주민호응도도 후 사업추진시 민원발생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1안의 댐 위치로 선정		설 등) 설치가 용이하며 주민호응도도 좋아 향		

4.3 수단·방법 대안

○ 저수지 계획을 수립하고자 댐 형식을 비교·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선정함.

댐형식 구분	균일형	중심지수 존형	표면차수벽형
댐의 높이	낮은 댐에서 일반적으로 시 공이 간편하고, 쉽게 제체의 차수성을 확보할 수 있을시 적합함.	전단강도가 큰 재료를 사용할 수 있고, 간극수압의 소산이 빠르므로 높은댐에 서 유리	∘ 댐높이가 높아지면 제체의 변형량이 증대하여 차수벽 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불리
재료의 성질 및 양	∘불투수성 재료의 구득이 용이할 경우 재료 단일로 시공이 간단하므로 유리		∘ 내제 사면의 차수재료 구득이 용이할 경우 제체단면에 폭 넓은 성토재료를 선택할 수 있어 경제적임
지 형	∘ 급경사 지형 불리	◦산측의 접합부가 급경사의 높은 댐에서는 불투수성죤 을 충분한 두께로 하던지 재질개량선정 필요	◦산측의 접합부가 급경사인 지형은 제체의 부등침하가 생기기 쉬우므로 부적합
지 질	∘ 기초지반이 토질일시 가 장 적합하며 사락 등의 투수성 기초에도 적합	∘ 기초지반이 사력 등의 투 수성 기초에서 적합	○기초가 암반이면 어느 형식 을 선정해도 좋으나 변형량 이 큰 연암 또는 다공질의 암, 구열이 발달된 암의 경 우는 불리
기상조건	∘ 한랭지 및 다우지대에서 는 토질재료가 적게 들어 유리	∘ 한랭지 및 다우지대에서는 토질재료의 함수비가 높아 져 시공가능일수에 제약을 받으므로 불리	
용 도		∘수위급강하가 빈번할 시 유리	◦좌 동
채 택		0	
채택사유	○축조재료(점·성토재)의 확보가 용이하고, 댐터의 지질조건(절리 및 파쇄대 발달) 및 저수지용도(농업용 댐)등 각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심지수 존형 필댐 형 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		

제5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근거

5.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근거

○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「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, 제10조」에 근거하여 사업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으로,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심의대상 규모 이하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평가항목·범위·방법, 대안 등을 결정하여, 결정된 항목 및 결정내용을 관련행정기관의 영동군 정보통신망 및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.

<표 5.1-1>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근거

구분	내용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	제8조(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대상)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(이하 "개발기본계획"이 라 한다)의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. 제10조(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)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(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,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「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(이하 "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"이라 한다)에 14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.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(이하 "정책계획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